

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

2026년 6월



목 차

1. 제정목적	3
2. 적용범위	3
3. 기본원칙	3
4. 실사 및 승인	4
5. 교육 및 자문	5
6. 위반사항의 신고 및 처리	5
7. 내부점검	6
8. 시행시기	6

<별 첨>

별첨 1 경제제재 관련 거래 실사 체크리스트(국문/영문)	7
별첨 2 경제제재법령 준수 표준조항(국문/영문)	11

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

1. 제정목적

회사는 군사적 분쟁, 테러, 유해 화학물질과 마약의 거래,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국제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품목의 유통 및 거래를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. 본 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(이하 "준수지침"이라 한다)은 위와 같은 국내외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- 2.1 본 준수지침은 회사, 회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(이하 통칭하여 "회사"라 한다) 및 그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2.2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회사, 컨설턴트, 에이전트, 판매대리점 등의 업체 또는 개인, 회사의 합작투자(Joint Venture) 파트너, 컨소시엄 참여 파트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거래하는 제3자(이하 "이해관계자"라 한다)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준수지침을 고지하고,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본 준수지침에 따라 국내외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기본원칙

- 3.1 회사의 임직원은 본 준수지침과 아래의 국내외 경제제재법령(이하 통칭하여 “경제제재법령”이라 한다)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- 국내의 각종 경제제재법령 (예: 대외무역법, 원자력법, 방위사업법, 남북교류협력촉진법, 화학·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,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)
 - 외국의 각종 경제제재법령 (예, 미국, EU 또는 UN의 경제제재 법령 등)
 - 경제제재관련 국제협약 {예: 바세나르체제(WA), 핵공급국그룹(NSG),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), 오스트레일리아그룹(AG), 화학무기의 개발

· 생산·비축·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(CWC), 세균무기(생물무기) 및 독소무기의 개발·생산·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(BWC) 등}

-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제재법령 (사업이 수행되는 현지 국가 법령 포함)

3.2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.

3.3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에서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국가¹ 또는 개인(또는 단체)²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(이하 통칭하여 “경제제재 관련 거래”라 한다)를 하고자 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. 실사 및 승인

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.1 경제제재 관련 거래에 대한 실사 및 승인

-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거래가 경제제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. 해당 거래는 <별첨 1 경제제재 관련 거래 실사체크리스트>에 따라 조사 및 평가되어야 하고, 평가결과는 반드시 컴플라이언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컴플라이언스팀은 해당 평가결과를 검토하고, 경제제재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며, 회사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¹ 이란, 러시아, 북한, 쿠바, 시리아, 리비아, 레바논, 이라크, 소말리아, 예멘, 수단, 남수단, 짐바브웨, 벨라루스, 베네수엘라 등(경제제재 대상 국가 List는 계속 변경되므로 위 List 외의 국가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마다 확인이 필요함)

² 거래금지 대상자(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, SDN) 명단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(OFAC)의 웹사이트(<https://sanctionssearch.ofac.treas.gov/default.aspx>)에서 확인 가능

- 회사의 임직원은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, 특히 거래상대방이 거래 금지 대상자³인지 여부 (미국, EU, UN 등으로부터 거래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는 정보), 거래내용이 경제제재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은 문서화하여 보존해야 한다.
-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 관련 거래에 대한 실사 또는 거래과정에서,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, 해당 거래가 경제제재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팀에 자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4.2 경제제재 관련 거래상대방과의 계약

경제제재 관련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. 그 내용은 <별첨 2 표준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>을 기준으로 하되,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①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해 왔으며, 앞으로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
- ②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 또는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,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
- ③ 거래상대방의 경제제재법령 또는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

5. 교육 및 자문

5.1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경제제재법령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교육은 서면,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5.2 회사의 임직원은 본 준수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자문하여야 한다

6. 위반사항의 신고 및 처리

6.1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준수지침을 위반하거나 그러한

³ 미국 정부의 SDN List 또는 SSI List 에 등재되었거나 UN 또는 EU 의 거래금지대상 List 에 등재된 경우 등.

위반과 관련한 회사의 조사를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.

6.2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준수지침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속상사, 컴플라이언스팀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신고 채널(<https://ethics.hd.com/>의 제보하기 란, 이메일, 전화 등)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.

6.3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은 보고 내용을 컴플라이언스팀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
6.4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7. 내부점검

7.1 컴플라이언스팀은 회사의 임직원이 본 준수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임직원은 이러한 점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7.2 컴플라이언스팀은 본 준수지침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, 실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정하여야 한다.

8. 시행시기

본 준수지침은 2026년 6월 16일부로 시행한다.